##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6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 김원이 · 양이원영 · 주철현

서영석 · 김승원 · 인재근

송재호 · 오영환 · 이성만

윤미향 · 홍익표 · 이원욱

기동민 • 박성준 • 이재정

이수진(비) · 강민정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

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②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
	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
	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u>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u>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